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미경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781 발 의 년 월 일:2023년 05월 30일 발 의 자:심미경, 경기문, 고광민

자:심미경, 경기문, 고광민, 김규남, 김영옥, 김영철, 김용호,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신복자, 유만희, 윤기섭, 윤영희, 이병윤, 이상욱, 임춘대, 정지웅, 최민규, 최호정, 홍국표 의원(24명)

1. 제안이유

- 서울시교육청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따라 노동조합 총 11곳에 노동조합사무소를 제공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사무소 지원에 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노조에 따라 사무소 규모, 보증금, 월세 등이 천차만별임
- 이에 최소한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 서울시교육청이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노동조합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 함

2. 주요내용

가. 가. 노동조합사무소나 사무장비 등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나. 교육감이 노동조합을 지원할 때 노동조합사무소 상주인원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교육감은 노동조합에 사무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유휴 공유재산을 우선 활용해야 하고, 유휴 공유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민간 시설을 임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노동조합사무소의 최소·최대 범위를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교육기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다. 기타: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교직원단체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최소한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 사무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노동조합"이라 함은 「교육기본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조직 및 설립된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 2. "노동조합 사무소"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말한다.
- 3. "상주인원"이라 함은 노동조합 사무소에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일을 상시적으로 계속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노동조합이 자주성을 잃지 않으면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 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지원대상의 범위 등) ① 교육감은 노동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노동조합의 규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노동조합 사무소
 - 2. 노동조합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장비(책상, 의자, 컴퓨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3. 노동조합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전기·통신 등 시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매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기준)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을 지원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노동조합 사무소의 상주 인원

- 2. 노동조합의 수입 대비 월차임 부담수준
- 3.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른 조합활동
- 4. 그 밖에 교육감이 노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사무소 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제1호에 따라 노동조합에 사무소(업무와 주거를 겸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상주 사무인력 1명당 기준면적 10㎡
 - 2. 사무소 전용면적 합계 최소 30m²에서 최대 100m²
 - ② 제1항에 따라 사무소를 지원하는 경우,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유휴 공유재산을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유휴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노동조합에 사무소를 지원하는 경우 노동조합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④ 교육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휴 공유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민간 시설을 임차하여 노동조합에 사무소를 지원할 수 있고, 지원 기준은 제1항각 호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제8조(사무장비 및 구비 시설 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노동조합 사무소 운영 및 설치에 필요한 사무장비와 구비 시설의 지원

범위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제1항의 사무장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노동조합 세부 지원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사무소 지원을 받은 노동조합은 사무소 임대차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